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40
----------	-------

발의연월일 : 2019. 3. 8.

발의자 :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김현권 · 백재현 · 변재일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김병관 · 안규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등).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0조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4.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위생사의 업무를 이행한 사람

օ)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u></p>
<p>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⑧ (생 략) <u><신 설></u></p>	<p>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u></p>
<p>제20조(벌칙) ① · ② (생 략)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 2. (생 략) <u><신 설></u> <u><신 설></u></p>	<p>제20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u> ----- -----. 1. · 2. (현행과 같음) <u>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u> 4. <u>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u></p>

<신 설>

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

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위

생사의 업무를 이행한 사람